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는 절주문화 조성 및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발굴, 상호교류·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협력사항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서로 협력한다.

1. 절주문화 조성, 음주조장환경 개선에 관한 공동연구 발굴 및 수행에 대한 상호 기술 지원, 자문
2.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과학적 근거 개발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및 대국민 대상 교육·홍보 활동
3. 절주문화 조성, 음주조장환경 개선 관련 이슈 또는 연구 결과 등에 대한 공개 학술행사 공동 개최
4.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관련 지식·정보 공유에 대한 사항
5. 본 협약서 이외에 상호 관심사항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 제3조 비용

본 업무협약에 의한 협력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분담한다.

## 제4조 보안

1. 본 업무협약에 의하여 교환되는 개인정보 등 비밀정보 및 문서는 개인 정보보호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양 기관은 협약이행·교류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과 관련한 정보가 협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는 본 양해각서의 효력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 제5조 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 협약 해지

1. 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지정하며, 기간 만료 후 상호 협의 하에 협약기간을 재설정 할 수 있다.
2. 협약 기간 중 협력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6조 기타

양 기관은 상호 간 신의와 성실로 협력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양 기관은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2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Korean Society of Alcohol science and Health Behavior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

원장 조현장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부산시 서구 감천로 262

학회장 고광욱